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91 발의연월일: 2020. 9. 17.

발 의 자: 강은미・이은주・류호정

배진교 · 장혜영 · 심상정

윤재갑 · 김민석 · 이용빈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 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5조).
- 나.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6 조의9, 제16조의10 및 제21조).
- 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대상이 됨에 따라 예술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함(제48조의 2 및 제49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99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을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의3. "노무제공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의4. "자영업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의5.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의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3.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나.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보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
- 다. 자영업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을 "사업주, 근로자,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은"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항이나 제4항"을 "제4항"으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제5조제3항 및 제4항"으로,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을 "근로자를"로, "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관계는"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이하 "고용보험관계"라 한다)는 「고용보험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관계"를 "산재보험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을 "근로자를"로 하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보험관계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신고)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

- 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이내에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중 "보험에 가입한"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고용보험의 보험료) ① 「고용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실업급여보험료"라 한다)
 - 2.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실업급여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이하 "고 용안정보험료"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한다)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

처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실업급여보험료의 보험료율 (이하 "실업급여보험료율"이라 한다)과 고용안정보험료의 보험료율 (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 ④ 「고용보험법」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가 부담 하여야 할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보험료는 자영업자의 보수총 액에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가 목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을 곱 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가목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 수의 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실업급여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한다.
- 2. 고용안정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⑦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⑧ 「고용보험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까지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원천공제"를 "원천공제·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제3항・

제5항에 따라 근로자,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등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근로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 2.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주, 근로자, 노 무제공자 등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등이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근로자등은 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를 "공단은 매월 사업주 및 제16조제3항·제5항·제6항에 따라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이하 "보험료납부자"라 한다)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산재보험료는"으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를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월의 중간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의2. 월의 중간에 근로자와 고용관계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 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4. 자영업자가 월의 중간에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자영

업자가"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사업주에게"를 "사업주 및 자영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 또는 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사업주는"을 "보험료납부자는"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에게"를 "보험료납부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납부자가"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을 "제16조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로, "또는 제4항에"를 "·제4항 또는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가"로,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로 한다.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6항에 따라 자영업자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자영업자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로 산정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예술인"을 "노무제공 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에"를 "제16조제3항에" 로, "예술인의"를 "노무제공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술인에 게"를 "노무제공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을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로, "예술인의"를 각각 "노무제공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을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로, "예술인에게"를 "노무제공 자에게"로. "예술인과의"를 "노무제공자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술인이"를 "노무제공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 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 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5조, 제77 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을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 의 제8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6항"으로. "사업 주"를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주"를 "사 업주 및 자영업자"로 한다.

⑥ 자영업자는 전년도 본인의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6조의10제1

항, 제2항 또는 제6항"으로,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는"으로, "제16조의9제2항"을 "제16조의9제3항"으로, "사업주에"를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를 "근로자에게"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를 "근로자에게"로,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보험료"를 각각 "산재보험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가"를 각각 "근로자등이"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에 고용되어"를 "사업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가는 자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자영업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
- 2.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22조의2제3항 중 "사업주에게는"을 "보험료납부자에게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및 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나목 및 다목 중 "사업주가제16조의1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제16조의10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를 "근로자등이"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이"로, "근로자의기"를 "근로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2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중 "사업주가"를 각각 "보험료납부자가"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사업주가"를 각각 "보험료납부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가입자가"를 "보험료납부자가"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업주에게"를 각각 "보험료납부자에게"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보험료납부자는 제7조"로,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를 "「고용보험법」 제10조에"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징수금의"를 "징수금에 대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에"를 "보험료납부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납부자가"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사실 및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의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사업장"을 "사업장,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장"으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제49조의4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4항"을 "제6항"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9조의6 전단 중 "제29조의3제6항(제48조의2

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29조의3제6항을"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1조에"로,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12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45조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청 - 게	게 기 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u>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 <u>"</u>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u>.</u>
<u> <신 설></u>	2의2. "일용근로자"란 「고용보
	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
	람을 말한다.
<u><신 설></u>	2의3. "노무제공자"란 「고용보
	험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u><신 설></u>	2의4. "자영업자"란 「고용보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
	<u>을 말한다.</u>
<u><신 설></u>	2의5.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
	<u>을 말한다.</u>
<u><신 설></u>	2의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이
	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	3. "보수"란 다음 각 목에 해당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	하는 금액을 말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가.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 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 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 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 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나. 노무제공자의 보수: 「소 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 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 해서는 본문에 따른 보수 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조정률을 곱 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

다. 자영업자의 보수: 「소득 세법」 제19조에 따른 사 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 4. ~ 7. (생 략)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 저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 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 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 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 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 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 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④ (생 략)
-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 | ⑤ 제4항-----산재보험----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 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정 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세5조(보험가입자) ①
<u>사업</u>
주, 근로자, 같은 법 제8조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은

<삭 제>

- ③ ④ (현행과 같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 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 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 야 하다.

⑥·⑦ (생략)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삭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 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u>근로자(고</u> 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 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	

⑥·⑦ (현행과 같음) 제>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근로자를----------<u>산재</u>보험

기간에도 <u>보험</u>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u>제1항 및 제2항</u>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u>보험관</u> 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 2. (생략)
-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

	4	<u>제2힝</u>					
제	7조(보험	관계의	성립	달일)	1	<u>산</u>
	재보	험의	보험:	관계(이하	"신	: 재
	<u>보험</u>	관계	"라 현	<u> </u>	<u>=</u>		
	<u>보험</u> 	관계	"라 호 	<u> </u>	== = 		
	<u>보험</u>	<u>관계</u>	"라 현 	<u> </u>	== = 		
		관계 제)	<u>"라 현</u> >	<u> </u>	======================================		

\circ	(현행과	コレウト
/.	(어앤과	イラー
⊿.	\ \\ \\ \\ \\ \\ \\ \\ \\ \\ \\ \\ \\ \	$\vdash \sqcup \prime$

3.	제5조제4학	<u>}</u>	

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5. (생 략) <신 설>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u>보험</u> 저 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 1. ~ 3. (생략)
-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u>근로자(고용보험의</u>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 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신 설>

	4.•5. (현행과 같음)
	②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이하
	"고용보험관계"라 한다)는 「고
	용보험법」 제10조제1항에 해
	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4]	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u>①</u> 산
	재보험관계
	1. ~ 3. (현행과 같음)
	4

- ② 고용보험관계는 「고용보험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 제11조의2(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신고) ① 노무제공플 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 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 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 제13조(고용보험의 보험료) 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노 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 지한 경우 계약의 개시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 여야 한다.

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 「고용보험법」 제6조제1항에 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따라 사업주, 근로자, 노무제공 보험료를 징수한다.

-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 재보험료"라 한다)
-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 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 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 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 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 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 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 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 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 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 자, 자영업자 등은 다음 각 호

 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실업급여보험료"라 한다)
 - 2.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실업급여보험료, 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보험료(이하 "고용안정보험료"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자영업자의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실업급여보험료의 보험료율(이하 "실업급여보험료와"이라 한다)과 고용안정보험료의보험료율(이하 "고용안정보험료율"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 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 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 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 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 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 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 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 험료율
-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

- ③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 용을 받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 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보 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 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 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 ④ 「고용보험법」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보 험료와 고용안정보험료는 자영 업자의 보수총액에 제2항에 따 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⑤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 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가목

의 1

-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 당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 험료율
-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 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가목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 급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
- 1. 실업급여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다만,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고용안정보험료: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법」 제3장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다만, 보수의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에 고용안정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⑦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8 「고용보험법」 제40조제5 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 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자영 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날까

<신 설>

지는 보험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① 사업주가 부담하여 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 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 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 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 험료율
-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 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삭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 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 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①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에 따 라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 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 할 수 있다.

제>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① 「고용보험법」의 적 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 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근로 자, 노무제공자(이하 "근로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등"이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같은 조 제 6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 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 를 그 <u>근로자</u>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전공제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	자등이] .	부담	하	여야	: 2	하는
고용	보험료	L를	대부	통령	령 (으로	정
하는	바에	따	라 :	ユ	근로	자	등의
<u>보수</u>	에서	원천	년공 <i>7</i>	세히	여	납보	부할
수 있	다.						

2			
	근로자등	<u>=</u>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 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 한 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 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 급인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근로자등이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보험료: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 2. 「고용보험법」 제15조의2제 2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 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④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실업급여의 보험 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납| 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 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주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 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주,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으로 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 ⑤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등이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료에 해당하 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한 다.

>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는 제13조제4항 에 따라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 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월 사업주 및 제1 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 6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u>경우에는</u>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른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7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 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 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 로 본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

(이하 "보험료납부자"라 한다)
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
②
<u>산재보험료는</u>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②

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 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 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 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 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 별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 하다.
 -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 1. 월의 중간에 근로자를 새로 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 료되는 경우

<신 설>

2. • 3. (생략) <신 설>

<u>제2조제3</u>
호가목
<u>.</u>

-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 보험료의 산정 등) -----------근로자등_----
 - 고용하거나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 1의2. 월의 중간에 근로자와 고 용관계 또는 노무제공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 는 경우
 - 2. 3. (현행과 같음)
 - 4. 자영업자가 월의 중간에 자 영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1 3	단은	<u>사업</u>
<u>주가</u> 제16조의	10제1	항부터	<u>제5</u>
<u>항</u> 까지의 규정	당에 따	·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기	나, 선]고한	내용
이 사실과 다	른 때어]는 <u>사</u>	·업주
<u>에게</u> 미리 일	리고	그 사	·실을
조사하여 다음	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 는 금	-액을	기준
으로 월평균	보수를	결정	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	있다.

- 1. (생략)
-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u>근로자의</u>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 3. <u>근로자</u>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료를 산정한 이후에 <u>사업주</u>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 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 할 수 있다.

세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
보험료 산정) ① <u>사업</u>
주 또는 자영업자가
제6항
사업주 및 자영업자에게
1. (현행과 같음)
2
<u>근로자등의</u>
3. 근로자등 또는 자영업자
2
<u>사업주 및</u>
<u> 자영업자</u>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u>사업주에게</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한다.

1. ~ 3. (생략)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
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
한) ① 보험료납부자는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u></u> 보험료납부자
에게
<u>.</u>
1. ~ 3. (현행과 같음)
②
<u>보험료납부자가</u>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u>근로자등</u>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등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는 제외한다.

<신 설>

-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 0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를 산정한다.
- ③ 건강보험공단은 <u>사업주가</u>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 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u>사업주</u>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u>제16조제3항</u>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6항에
따라 자영업자가 신고한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을 자영업자가 실제로 납부하
여야 할 보험료로 산정한다.
③사업주 또는 자영업
<u> </u>
제4항 또는 제6항에
<u>④</u> 사업주 또
<u>는 자영업자가</u>
사업주
<u>또는 자영업자</u>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u>⑤</u>
<u>사업주 또는 자영업자</u>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u>노무제공자</u>
<u>제16조제3항에</u>
<u>노무제공자의</u>

-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 용하거나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그 근 로자, 예술인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그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 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와 고용관 계를 종료하거나 <u>예술인과의</u>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

②
- <u>노무제공자에게</u>
③
노무제공자와 「고용
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
무제공계약을
<u>노무제공자의</u>
노무제공자
의
(4)
<u>노무제공자와</u> 의 노무제공계약읔
ㅋ ㅜㅜ세ㅜ게막슥

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의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 또는 그 예술인과의 계약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예술 인이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 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원수 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

<u>노무제공자</u>
에게
노무제공자와의
⑤ <u>노무</u>
제공자가
⑥ 자영업자는 전년도 본인의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까지의 규정
<u>®</u>
<u>제15조</u>

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생략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 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 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 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 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 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 라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 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

<u>.</u>	
<u>⑨</u> 제1항부터 제6항	
<u>및 자영업자</u>	
<u>사업주 및 자영업자</u>	
제16조의11(수정신고) <u>제16</u> <u>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u>	
기어ス	1
<u>사업주</u> <u>자영업자는</u>	<u> </u>
	<u>华</u> 亡
	<u>제</u>

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 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 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 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 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 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의 신고와 납부) ①
<u>근로자에게</u>
산재보험료율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기한보다 그 보험연도의 작업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기한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 저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② ~ ⑥ (현행과 같음)

_	_	. —	• '				
स् <u>।</u> 18	조(보호	험료율	의	인성	나 또	는	인
하	등에	따른	조	치)	1		
					사업	구	및
水	영 엄 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 율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

	,
	②사업주 및 자영업자-
	<u>사업주 및 자영업자</u>
제	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
	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료율 보험료율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 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 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 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전일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u>산재보험료</u> 납부방법
의 변경시기)
<u>산재보험료</u>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u>근로자등이</u>
<u>근로자등이</u>
<u>제5항</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u>사업에 고용되어</u>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3. (생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제 ·② (생 략)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 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 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

1
사업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자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 그 자영업자가 제13조제4항
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것
2.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
, looz do(u zl =
[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 ② (현행과 같음)
3
보험료납부자에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 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 1. ~ 6. (생략)
- ②・③ (생 략)
-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

<u>L</u>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u>사업주 및</u>
<u> 자영업자</u>
사업주 및 자영업자
· 1. ~ 6. (현행과 같음)
①·③ (현행과 같음)
4)
·

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
 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부터 7일
 - 나. <u>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u>
 <u>항·제2항 또는 제4항</u>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
 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 다. <u>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u>
 <u>항·제2항 또는 제4항</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

1. (현행과 같음)
2
가. <u>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u>
16조의10제1항·제2항·제
4항 또는 제6항
나. 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
<u>1</u> 6조의10제1항·제2항·제
<u>4항 또는 제6항</u>
다. <u>사업주 및 자영업자가 제</u>
16조의10제1항·제2항·제
 4항 또는 제6항

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 4. (생략)

-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 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항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그 금액을 지급한다.
- ⑥ 공단은 <u>근로자가</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 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 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 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u>근로자등이</u>
<u>근로자등의</u> -
<u>근로자등에게</u> -
근로자등에게-
근로자등에게-
<u>근로자등에게</u> -
근로자등에게-
<u>근로자등에게</u> -

⑦·⑧ (생 략)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 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 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략)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 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 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 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 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 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 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

(7) · (8) (현행과 같음)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u>보험료납부자가</u>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험료납부</u>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험료납부</u> <u>자가</u>

한다.

④ (생 략)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 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 의 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 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② 건강보험공단은 <u>보험가입자</u>
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가 밖의 장수금을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
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장수금
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

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

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현행과 깉	음)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u></u> 보	험료납.	부자기	<u>7}</u>
<u></u> 보克	로납부	-자기	
②		보험	료납부
<u> 자가</u>			

③ • ④ (생 략)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u>사</u> 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알려야 한다.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부) ① <u>제5조제1항</u> 또는 <u>제3항</u> 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스 험료납부자에게
_
·
· 1. ~ 6. (현행과 같음)
②
보험료납부자에
게
<u></u>
·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부) ① <u>보험료납부자는 제7조</u>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③ . ④ (청해고 가으)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집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u>사업주에</u>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 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⑤ (생 략)

<u>경우</u>
<u>징</u> 수금에 대하여
② (현행과 같음)
3
<u>보험료납부자에</u>
4)
프 험료납부자가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제45조(조사) ① ---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1	(현
행과 같음)			

2	공	단.	<u> </u>	노	무	제	공	자.	의	노	무
제 군	7	사ረ	실	및	노	.무	제	공	에	II	른
<u>보</u> 수	<u>}</u>	등을	<u>)</u>	확	인천	計フ	<u>']</u>	위	하	여	노
무지	ll 공	'자	의	노	:무	제	공	과	곤	l 런	된
<u>노</u> 투	구저	공	플	랫モ	독 스	<u> </u>	9]	入	·업	주
<u>에</u> 가]] .	관팅	뉟	자.	豆ら	기	제	출	을	요	<u>청</u>
할	수	있	다.	Ò] ;	경우	<u>}</u>	자	료	의	제
출을	<u>)</u>	요 >	청본	<u> </u>	. 7	아는	<u>-</u>	정	당	한	사
<u>유</u> 기	}	없.	<u> </u>]]	ユ	요	청	에	u	라라	-야
한[<u>}.</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세44조(보고)	
	-
	-
	-
	-
	-
자 및 노무제공자	-
	-
	-
	-
,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 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 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 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 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u>A</u> }
업장,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
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과 관련
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사업
<u> 장</u>

② ~ ④ (현행과 같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 제>

-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 등,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수있다.
-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 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 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 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

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 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 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 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한다.
- 8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 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

 5조제1항·제7항, 제6조제3항,

-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을 말한다.
-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부과에 관하여는 제3 조, 제13조제1항제1호·제2항 (같은 항 단서규정은 제외한 다)·제4항제2호, 제16조의2 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 부터 제16조의9까지, 제16조의11, 제16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따른 보험료율"을 말한다.
-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
 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
 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
 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

- 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 다.
-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을 말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삭 제>

가입된 것으로 본다.

-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 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 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 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

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 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8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 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 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 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 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본다.
-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

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 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 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

 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 저 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의6(벌칙) 제29조의3제6항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세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3조제3항제6항</u>
<u>제13조제2항</u>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49조의6(벌칙) <u>제29조의3제6항</u>
<u>호</u>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 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2. 제29조의3제1항(제48조의2제 8항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

·
법률 제1742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과태료) ①
,
1. <u>제11조에</u>
<u>제12조에</u>
2. 제29조의3제1항에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	
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제48조의2제8항제4호	3. <u>제44조에</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u>함한다)에</u> 따른 요구에 불응	
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	
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	
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제48조의2제8항	4. <u>제45조제1항에</u>
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u>를 포함한다)에</u>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	
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